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2조제2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다.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라.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

다만,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·위신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 횟수가 3회를 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1호	200	400	800
나.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	법 제63조제1항제2호	200	400	800
다.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·제4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요구 또는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	법 제63조제1항제3호	200	400	800

제출한 경우 라.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국가인권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63조제2항	50	100	200
---	-----------	----	-----	-----